

월간궐도

중소기업을 위한 월간 법률 실무 해제

제3호 · Issue 03

2026년 6월

발행 / 신한솔 변호사

이번 호 목차

- 섹션 01 — 하도급법 실무 해제: 공정위가 커지는 시대에 대구 제조업체가 확인해야 할 것
- 섹션 02 —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디지털 재산과 이용약관의 구조
- 섹션 03 — 이 달의 판례 둘

편집자의 말

월간궤도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오너와 실무자를 독자로 상정하는 월간 법률 실무 해제지다.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쓴 글이다. 블로그에 쓰는 대중용 해설과는 결이 다르다. 조문을 인용하고, 판례의 사실관계를 깊이 풀고, 법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배치한다. 읽기 편한 글보다 정확한 글을 목표로 한다.

매호 두 개의 해제(섹션 1·2)와 한두 건의 주목할 판례(섹션 3)를 신는다. 해제의 주제는 중소기업 오너의 실무에 직접 닿는 것을 우선하되, 때로는 발행인이 관심을 두는 영역을 포함한다. 이 달의 판례는 호에 따라 1~2건을 선별한다.

월간궤도는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하도급법 실무 해제

공정위가 커지는 시대에 대구 제조업체가 확인해야 할 것

0. 도입 — 공정위가 커진다

2026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 종전 500~600명 규모에서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향이 확인되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기조도 바뀌고 있다. 종전에는 경고나 과태료로 종결되던 사안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실무의 관측이다.

이 변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역이 하도급거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근거한 공정위 심결례 검색 기준으로 하도급 관련 의결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고, 2026년 1분기에만 10건 이상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그중에는 대구 달성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한세모빌리티 주식회사, 사건번호 2024기조0481, 2026. 3. 11. 의결)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받은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대구·경북 제조업의 하도급 구조는 이 법의 적용 대상 한복판에 있다.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금속 등 대구·경북 주력 업종에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관계는 일상적이고, 그 거래 관행 중 상당수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해제는 하도급법이 무엇을 금지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뒤, 대구·경북 제조업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위반 유형 4가지를 심결례와 함께 해부한다. 이어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조사되며 원사업

자가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정리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과징금·벌금·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조, 불복·구제 경로, 그리고 계약서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다룬다.

1부. 하도급법은 무엇을 금지하는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분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은 원사업자를 정의한다. 제조위탁의 경우,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관계가 성립한다(제2조 제2항 제1호). 중소기업자 사이에서도, 위탁하는 쪽의 연간매출액이 위탁받는 쪽보다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한다(제2조 제2항 제2호 본문). 다만 연간매출액이 제조위탁의 경우 3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위탁의 유형은 네 가지다: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대구·경북 제조업에서 가장 빈번한 것은 제조위탁이다. 한세모빌리티 사건에서 공정위는, 피심인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써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탁한 사실을 인정하여 제2조 제2항 제1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금지행위의 전체 구조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에게 금지하는 행위는 제3조부터 제20조까지에 걸쳐 있다. 전체를 한 번에 보면 다음과 같다.

조문	금지행위	요약
제3조	서면발급의무	계약서면을 제때 제대로 주어야
제3조의4	부당특약 금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지 마라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게 정하지 마라
제5조	물품구매강제	자기 물건을 억지로 사게 하지 마라

제8조	부당 위탁취소·수령거부	마음대로 주문 취소하지 마라
제10조	부당반품	멀쩡한 물건 돌려보내지 마라
제11조	감액금지	이미 정한 대금을 깎지 마라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전·물품·인력 등 부당하게 뜯지 마라
제12조의3	기술자료 유용 금지	수급사업자 기술을 빼돌리지 마라
제13조	대금 지급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줘라
제14조	직접지급	일정 요건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
제16조의2	대금조정 협의 거부 금지	원가 변동 시 협의에 응해라
제19조	보복조치 금지	신고했다고 불이익 주지 마라

제3조는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을 규정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하도급대금 조정요건·방법·절차,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4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한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항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6조의4는 원사업자 의무사항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을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으로 열거한다.

제4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금지한다.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은 8가지 유형을 열거하는데, 일률적 비율 단가 인하, 일방적 금액 할당 후 공제, 특정 수급사업자 차별, 착오 유발에 의한 결정, 일방적 낮은 단가 결정, 수의계약 시 직접공사비 미만 결정, 경쟁입찰 시 최저가 미만 결정, 원사업자 경영적자를 이유로 한 불리한 결정이 이에 해당한다.

제5조는 물품 등의 구매강제를 금지한다. 제6조는 선급금의 지급 의무를 규정한다. 제8조는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를 금지한다. 제9조는 검사의 기준·방법·시기를 규정한다. 제10조는 부당반품을 금지한다.

제11조는 감액을 금지한다.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행위를 9가지 열거한다: 위탁 후 불합리한 이유의 감액, 단가 합의 성립 전 위탁분에 대한 소급 감액, 현금 지급이나 조기 지급을 이유로 한 과도한 감액, 수급사업자의 사소한 과오를 이유로 한 감액, 물품 구매대가나 장비 사용대가의 과도한 공제, 물가 하락을 이유로 한 감액, 경영적자를 이유로 한 감액,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원사업자 부담 경비의 전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제12조는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를 금지한다. 제12조의2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를 금지한다. 제12조의3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금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되, 요구목적·권리귀속관계·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고(제2항),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3항).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제4항).

제13조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규정한다. 핵심은 60일 규칙이다.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수령일이 지급기일이 되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된다.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가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규정한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3자

합의가 있거나, 원사업자가 대금 2회분 이상을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는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규정한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를 각각 금지한다. 특히 제19조의 보복조치 금지는, 수급사업자가 신고·공정위 조사 협조·분쟁조정 신청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억 원 이하 벌금(제30조 제2항 제1호)과 3배 징벌적 손해 배상(제35조 제2항 제1호)의 대상이 된다.

이상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전체 지도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제조업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서면 미발급(제3조), 부당감액(제11조), 대금 지급 지연(제13조), 기술자료 관련 서면 미교부(제12조의3 제2항)의 4가지로 수렴한다. 다음 파트에서 이를 각각 심결례와 함께 해부한다.

2부. 대구·경북 제조업에서 자주 걸리는 4가지

하도급법 위반 유형은 다양하지만, 공정위 심결례를 보면 제조업 하도급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 유형은 4가지로 수렴한다. 서면 미발급, 부당감액(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포함), 대금 지급 지연, 기술자료 관련 의무 위반이다. 이 가운데 서면 미발급이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 세 가지는 서면 미발급과 함께 병합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서면 미발급 — 제3조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이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제2항의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의무

화한다.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정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제3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하여 위탁일과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지급기일, 원재료 제공 시 그 품명·수량·대가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하도급 대금의 조정요건·방법·절차.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연동 대상 목적물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현실에서 이 요건을 완전히 갖춘 서면을 위탁 전에 발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구두 발주, 이메일 발주, 법정 기재사항 누락, 서명·기명날인 누락이 빈번하다.

성우하이텍 사건(2026. 3. 18. 의결, 사건번호 2023하조1400)이 이를 보여준다. 부산 기장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성우하이텍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경과한 후에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사건(2026. 2. 27. 의결, 사건번호 2023하조1401)도 동일한 구조다. 울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서면 미발급 외에 부당특약,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결과 미통지,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6가지 위반이 병합하여 인정되었고, 과징금 5,000만 원이 부과되었다.

대법원 2021두49208(2024. 11. 28. 선고)은 서면발급의무 위반의 정당사유를 엄격히 해석한 판결이다. 원고(선박·해양플랜트 건조업체)는 수정추가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 특성상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하였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2010년 개정된 하도급법 제3조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서면발급의무를 원칙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서면발급의무 자체가 면제되

기 위한 정당한 사유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보다 엄격한 상황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수정추가공사가 빈번하다는 사정만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원래 이렇게 해왔다', '업계 관행이 그렇다', '급해서 서면을 못 썼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부당감액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제11조, 제4조

부당감액(제11조)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은 구별된다. 부당감액은 이미 정한 대금을 사후에 깎는 것이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처음부터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정하는 것이다.

제11조 제2항이 열거하는 부당감액의 9가지 유형 중 대구·경북 제조업에서 특히 빈번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제1호). '이번에 경기가 안 좋으니 10% 깎자'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제7호). 원사업자의 경영적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이 인정되려면,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제11조 제3항). 서면 없는 감액은 그 자체로 절차적 하자가 된다.

한편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 2021두49208에서 법리가 제시되었다. '단가가 낮은지 여부'는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 대상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방식·규모·기간, 사업자들의 시장 지위나 사업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한다.

제4조 제2항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는 8가지 유형을 열거한다. 이 가운데 제5호('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유형이다. 대법원은 이를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해석하였다.

부당감액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모두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다(제35조 제2항 제1호).

3. 대금 지급 지연 — 제13조

제13조의 핵심은 60일 규칙이다.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는 세 가지 세부 장치가 따른다.

첫째,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둘째,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할인이 가능한 어음이어야 하고, 어음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제6항).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제7항). 셋째,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8항).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사건에서 이 세 가지 장치 위반이 모두 인정되었다. 22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기일이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제13조 제7항 위반),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제13조 제8항 위반).

현실에서 60일 규칙 위반은 대구·경북 제조업에서 구조적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먼저 지급하기를 꺼리는 관행, 어음 결제의 장기 만기 관행, 할인료·수수료 별도 지급에 대한 인식 부재가 겹친다.

4. 기술자료 관련 의무 위반 — 제12조의3

제12조의3은 2013년 신설된 조문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원

칙적으로 금지하되(제1항),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요구할 수 있다(제1항 단서). 그런데 이 경우에도 두 가지 절차적 의무가 따른다.

첫째, 요구목적·권리귀속관계·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한다(제2항). 둘째,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3항). 비밀유지계약에는 기술자료의 범위,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7조의4).

한세모빌리티 사건(2026. 3. 11. 의결, 사건번호 2024기조0481)이 이 유형의 대표적 사례다.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제2항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12조의3 제2항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에이디티 사건(2026. 4. 3. 의결, 사건번호 2024기조1049)은 더 무거운 사례다. 안산 소재 자동측정장치 제조업체인 에이디티는 기술자료 서면교부의무 위반(제12조의3 제2항)에 더하여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제3항), 부당특약 설정(제3조의4)까지 병합하여 인정되었고, 과징금 1억 1,200만 원이 부과되었다.

기술자료 유용 그 자체(제12조의3 제4항 —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는다.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다(제35조 제2항 제2호). 공정위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에도 포함된다(제22조 제5항).

기술자료를 유용할 의사가 전혀 없더라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이라는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반이 성립한다. 절차 불이행 자체가 제재 대상인 구조다.

이 4가지 위반 유형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보다 병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사건에서 6가지 위반이, 에이디티 사건에서 3가지 위반이 동시에 인정된 것이 이를 보여준다. 하나가 걸리면 나머지도 함께 조사된다.

2부의2.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신고에서 의결까지

개시 — 세 가지 경로

수급사업자의 신고(제22조 제1항), 공정위의 직권인지(제22조 제2항), 제보 접수 후 직권인지 전환의 세 가지 경로다.

공정위가 매년 수급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제22조의2)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수급사업자가 조사표에 '원청이 대금을 60일 넘겨 지급한다'고 기재하면, 공정위가 이를 근거로 직권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신고보다 심리적 부담이 적고,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는' 구조다.

조사 대상 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의 거래로 제한된다(제23조 제1항). 다만 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이다. 서면 미교부(제2항)나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제3항)도 제12조의3 위반이므로 7년이 적용된다.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이 신청된 거래는 3년이 지난 후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단서).

조사 — 공정위는 무엇을 하는가

하도급법 제27조 제2항이 독점규제법 제81조(조사 등)를 준용한다. 조사 방법은 두 가지다.

서면조사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이메일 등을 제출받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현장조사는 조사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확보한다. 현장조사 시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수집된 경우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피심인(원사업자)에게 송부된다. 피심인은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 기일에 출석하여 구두 진술할 수 있다. 이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심의·의결하여 시정명

령, 과징금, 경고, 무혐의 중 하나를 결정한다.

소명의 구조

공정위 조사·심의 단계에서는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통한 소명이 문제된다. 이후 과징금 취소소송 등 사법심사 단계에서는 처분사유 및 예외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문제가 본격화된다.

서면 미발급(제3조): 서면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 '줬다'고 주장하려면 서면을 제시해야 한다. 못 내놓으면 위반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1두49208이 정당사유를 극히 엄격하게 해석한 것도 이 맥락이다.

부당감액(제11조): 감액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원사업자가 소명해야 한다(제11조 제1항 단서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 소명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전환되어 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것의 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또는 공정위)에게 있다. 다만 대법원 2025다209941이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소명 부담을 완화하였다.

대금 지급 지연(제13조): 수령일과 지급일이 객관적 사실이므로 소명이 상대적으로 쉽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으로 확인된다.

원사업자의 전형적 반박과 배척 패턴

원사업자 반박	공정위·법원의 판단	실무상 의미
업종 특성상 서면을 미리 줄 수 없었다	정당사유 엄격 해석 (대법원 2021두49208)	급한 거래일수록 최소 서면 필요
늦게 줬지만 결국 줬다	작업착수 전 발급이 기준 (성우하이텍)	사후 계약서로 치유 어려움
기재사항 일부만 빠졌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 (성우하이텍)	2023년 개정 기재사항 확인 필요

경영이 어려워 감액했다	제11조 제2항 제7호 명시 배척	경영난 전가는 정당사유 아님
수급사업자가 동의했다	실질적 동의 여부 (대법원 2021두49208)	서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발주처가 돈을 안 줬다	60일 규칙은 수령일 기산	원청 자금사정은 항변 아님

'업종 특성상 서면을 미리 줄 수 없었다': 대법원 2021두49208에서 배척. '수정추가공사가 빈번하다'는 항변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구 제조업에 대입하면 '금형 도면이 수시로 바뀌어서', '완성차 업체가 급하게 주문을 바뀌서', '설계 확정 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해서' — 전부 통하지 않는다.

'서면은 줬다. 다만 좀 늦었을 뿐이다': 성우하이텍 사건에서 확인되는 패턴이다. 피심인은 개발요청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이후 계약서를 별도로 발송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실제 작업을 완료한 날을 작업착수일로 보았고, 이 날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갖춰진 서면이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핵심은 '언제 줬느냐'가 아니라 '작업 시작 전에 줬느냐'다. 작업이 시작된 후에 서면을 주면, 아무리 완벽한 계약서라도 지연 발급이다.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만 빠졌을 뿐이다': 성우하이텍 사건에서 확인된다. 피심인은 계약서 자체는 있었지만,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 및 절차'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다. 이 항목은 2023년 개정으로 추가된 법정 기재사항이다. 공정위는 법정 기재사항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이라고 본다. 종전 양식의 계약서를 그대로 쓰고 있는 원사업자가 2023년 개정 이후 추가된 기재사항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영이 어려워서 단가를 깎은 것이다': 제11조 제2항 제7호가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경영사정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완성차 업체가 단가를 깎아서', '수출이 줄어서' — 전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가 동의했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사건에서 자주 등장한다. 대법원 2021두49208

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란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를 낮게 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수급사업자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적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상 지위의 비대칭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급사업자가 '거래를 계속하려면 사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구조 자체가 하도급법이 규율하려는 대상이다.

'발주자한테서 돈을 아직 못 받아서': 60일 규칙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기산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 지급 의무가 별도로 발생한다(제13조 제3항). '위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는 항변이 아니라 60일 규칙 위반의 전형적 사유다.

사실상 유일하게 유효한 방어는 자진시정이다. 성우하이텍 사건에서 피심인이 2023년 3월에 법정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한 기본계약서로 개정하고, 서면 지연 발급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것이 자진시정 노력으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10% 감경되었다.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심의에 협조하였다. 서면 미발급이나 대금지연처럼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위반은, 심의 단계에서 '그런 적 없다'고 버티는 것보다 조사 단계에서 시정과 감경 사유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가 된다. 부인이 아니라 감경이 방어 전략의 핵심이다.

3부. 제재의 구조 — 과징금, 벌금, 징벌적 배상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세 갈래로 작동한다. 행정제재(시정명령·과징금), 형사제재(벌금), 민사제재(징벌적 손해배상)다. 세 갈래는 독립적으로 병행될 수 있다.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원사업자가 동시에 형사 고발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구조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행정제재 — 시정명령과 과징금

공정위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면 시정조치를 명한다(제25조 제1항). 시정조치의 내용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재발방지 등이다.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5조 제3항).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30조 제2항 제3호). 시정명령 불이행 자체가 독립된 범죄가 된다.

한편, 공정위가 정식 절차 전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제25조의5).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과징금의 상한과 두 가지 트랙

과징금의 상한은 하도급대금의 2배다(제25조의3 제1항). 과징금 산정은 위반 유형에 따라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뉜다.

첫째, 비율과징금이다. 부당감액, 대금 지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얼마를 덜 줬는가'를 금액으로 특정할 수 있는 위반에 적용된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의 2배 $\times$ (위반금액 $\div$ 하도급대금) $\times$ 부과기준율. 여기서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이다. 위반금액은 미지급금액, 감액금액, 지연이자 미지급액 등 실제 법 위반과 관련된 금액이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둘째, 정액과징금이다. 서면 미발급,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등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절차적 위반에 적용된다.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성우하이텍 사건(서면 미발급)에서 기본산정기준이 4,000만 원으로 설정된 것이 이 트랙이다.

과징금 산정의 4단계

어느 트랙이든 과징금은 4단계를 거쳐 산정된다.

1단계는 기본산정기준의 결정이다. 비율과징금이면 위 공식으로, 정액과징금이면 시행령 별표2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중대성 판단은 점수제로 이루어진다. 위반행위 유형·정도, 위반기간, 수급사업자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점수를 매기고, 점수 구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세 단계로 분류한다.

2단계는 1차 조정이다. 위반행위의 횟수와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이다. 위반 건수가 많거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많으면 가중된다.

3단계는 2차 조정이다.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를 종합하여 조정한다. 이 단계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가중 사유는 세 가지다.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 조치(경고 이상) + 누산 벌점 2점 이상인 경우 1차 조정 산정기준의 최대 20%를 가중한다. 위반행위가 3년 이상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된 경우 가중한다.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도 가중 사유다. 성우하이텍 사건에서는 위반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45%가 가중되었다.

감경 사유는 두 가지가 핵심이다. 조사 단계부터 심의 단계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감경된다. 성우하이텍 사건에서 20%가 감경되었다. 자진시정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감경된다. 성우하이텍 사건에서 피심인이 2023년 3월에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한 기본계약서로 개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것이 인정되어 10%가 감경되었다.

4단계는 부과과징금의 결정이다. 2차 조정 결과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심결례를 통해 본 과징금 산정 과정

성우하이텍 사건(서면 미발급, 정액과징금 트랙)의 산정 과정을 추적하면 구조가 보인다. 기본산정기준 4,000만 원에서 출발한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었다. 1차 조정 사유는 없어 기본산정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2차 조정에서 3년 이상 반복 가중 45%(+1,800만 원), 조사 협조 감경 20%(-800만 원), 자진시정 감경 10%(-400만 원)이 적용되어 1차 조정 산정기준 대비 15%가 가중된 4,600만 원이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된다. 4단계에서 추가 조정 없이 4,600만 원이 부과과징금으로 확정되었다.

에이디티 사건은 위반 유형이 3가지(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부당특약)로 병합되면서 각 위반행위별 과징금이 합산되어 총 1억 1,200만 원이 부과되었다. 위반 유형이 병합되면 과징금도 합산된다.

운용 기조의 변화

과징금의 법적 상한(하도급대금의 2배)이나 산정 공식 자체는 법령과 고시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액과징금 트랙에서 기본산정기준을 잡을 때, 그리고 중대성 판단에서 점수를 매길 때 공정위의 재량이 작동한다. 같은 위반이라도 종전에 경고로 종결하던 것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거나, 기본산정기준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은 법령 개정 없이 운용 기조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것이 법령·고시 개정으로 명문화된 것인지, 사건 처리 운용기조의 변화인지는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 공정위의 인원 증원과 제재 강화 기조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 재량의 폭 안에서 나타난다.

형사제재 — 벌금과 공정위 고발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은 제3조(서면발급)부터 제13조(대금 지급)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벌금의 상한이 하도급대금에 연동되므로, 거래 규모가 클수록 벌금 상한도 커진다.

제19조(보복조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30조 제2항 제1호). 양벌 규정(제31조)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된다.

하도급법 제32조는 제30조의 죄에 관하여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실무상 형사절차로 이어질지는 공정위의 고발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민사제재 —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은 일반적 손해배상을 규정한다.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면제된다.

제2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3배 배상의 대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제8조 제1항), 부당반품(제10조), 부당감액(제11조 제1항·제2항), 보복조치(제19조). 5배 배상의 대상: 기술자료의 부당 사용·제공(제12조의3 제4항).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7가지 사항을 고려한다(제35조 제3항):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 인식의 정도, 피해규모,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대법원 2025다209941(2025. 11. 20. 선고)에서 징벌적 배상이 실제로 적용되었다. 원사업자(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도급받으면서 표준품셈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다. 그런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때는 표준품셈의 40%를 적용하여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하였다. 하도급 비율이 60.6%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원사업자는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적정성 심사를 면탈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이를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하고,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합계 17억 원의 배상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확정하였다. 이 판결은 입찰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 부당성이 인정되면 제4조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증명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 수급사업자의 소명 부담을 완화하였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공정위 처분을 선행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가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은 행정제재이므로 형사 벌금과 병과되나, 법원이 징벌적 배상액 산정 시 이미 부과된 벌금·과징금을 고려하므로(제35조 제3항 제4호) 사실상 총량 조절이 이루어진다.

4부. 불복과 구제의 경로

원사업자의 불복 — 공정위 처분에 대한 다툼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원사업자는 두 가지 경로로 불복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 27조 제1항이 독점규제법의 이의신청·소송 규정을 준용한다.

첫째, 이의신청이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대상, 내용, 사유를 기재하고 증명 서류를 첨부한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둘째, 행정소송이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관할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이다. 서울고등법원이 1심이므로 대법원이 2심(최종심)이 된다.

이의신청은 필수가 아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면 그 재결까지 소 제기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수급사업자의 구제 — 4가지 경로

첫째, 공정위 신고(제22조)다. 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제8조(부당 위탁취소), 제10조(부당반품), 제11조(부당감액), 제12조의3 제4항(기술자료 유용)을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제22조 제5항). 신고에 따른 보복조치는 제19조에 의하여 별도로 금지된다.

둘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제24조의4)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제24조의4 제4항).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24조의6 제4항). 분쟁조정은 공정위 신고와 별개의 경로다. 공정위 신고가 행정제재를 목표로 한다면,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다.

셋째, 직접지급 청구(제14조)다. 대법원 2021다273592(2025. 4. 3. 선고)는 직접지급사유 발생 시점과 제3채권자의 압류 시점이 우열을 가른다고 판시하였다.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이미 압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다215212(2026. 2. 26. 선고, 대구 사건)는 직접지급 합의의 묵시적 해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한번 확보한 직접지급 합의가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였다. 두 판결을 종합하면 직접지급 합의는 빨리 확보해야 하고, 한번 확보한 합의는 쉽게 해지되지 않는다.

넷째, 민사소송이다. 공정위 처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다. 3배 또는 5배 징벌적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금지청구(제34조의2)로 위반행위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

4가지 경로는 병행이 가능하다.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동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5부.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하도급법 위반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배태되는 경우가 많다. 이 파트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각각의 관점에서 계약서 작성·검토 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다.

서면의 법정 기재사항 — 원사업자의 의무

제3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계약 서면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위탁일과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지급기일, 원재료 제공 시 그 품명·수량·대가, 하도급대금 조정요건·방법·절차,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서면발급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하도급대금 조정요건·방법·절차'는 2023년 개정으로 강화된 기재사항으로서, 종전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항목이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것도 위반이다.

부당특약의 유형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사건에서 부당특약으로 인정된 4가지 약정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유형이다. 검사 시 원사업자의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약정.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발생액이 하자보증금을 초과하면 수급사업자가 이유 없이 초과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한 약정. 계약변경 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약정. 거래과정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약정.

대법원 2021두49208은 대표이사 연대보증 약정에 대하여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3% 이내 미정산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인정되었다. 연대보증은 추가 채무가 아니므로 부당특약이 아니지만, 정산 면제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깎는 것이므로 부당특약이다. 계약서 조항을 검토할 때 실질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과 비밀유지계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권리귀속관계·대가를 미리 협의하여 서면으로 주어야 하고(제12조의3 제2항),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3항). 한세모빌리티 사건과 에이디티 사건 모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 의무는 기술자료 유용(제4항)과는 별개의 것이다. 유용할 의사가 전혀 없더라도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이다.

맺음

하도급법은 제3조부터 제20조까지 원사업자의 의무와 금지행위를 촘촘하게 배치하고 있다. 전부를 외울 필요는 없다. 대구·경북 제조업에서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네 가지다. 서면을 제때 제대로 주고 있는가. 이미 정한 대금을 사후에 깎고 있지 않은가.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과 비밀유지계약을 갖추고 있는가.

공정위가 커지고 있다. 종전에 경고로 끝나던 것들이 과징금으로 바뀌고 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나머지도 함께 조사된다는 것을 심결례가 보여주었다.

나는 대구에서 법을 다룬다. 하도급 분쟁은 원청과 수급인 사이의 힘의 비대칭이 전제되어 있고, 그 비대칭을 법이 어떻게 교정하려 하는지의 구조를 이 해제에서 보여주었다. 구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과징금 고지서가 도착한 뒤에 드러난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디지털 재산과 이용약관의 구조

0. 도입

2003년, 바람의나라에서 캐릭터를 키우던 사람은 자기가 그 캐릭터를 '소유'한다고 생각했다. 메이플스토리에서 수십만 원을 넣어 뽑은 아이템도, 리니지에서 수년간 키운 계정도, 그 사람의 것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느꼈다.

법적으로는 한 번도 그의 것이었던 적이 없다.

이용약관을 열어보면, 게임 내 모든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고, 이용자는 '이용권'만 부여받으며, 회사는 서비스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고, 종료 시 일체의 보상 의무가 없다. 이 구조는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팀에서 '구매'한 게임, 아이튠즈에서 '구매'한 음악, 쿠팡에서 '구매'한 전자책, 넷플릭스에서 다운로드한 영화 — 전부 동일한 구조다.

돈을 냈는데 소유한 적이 없는 재산. 이 해제는 그 구조를 법적으로 해부한다.

1부. 이용자는 무엇을 산 것인가 — 소유권, 이용권, 계정

디지털 재화의 거래에서 이용자가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허락(라이선스)이다. 이 구조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출발하였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이용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이 논리가 게임, 음악, 영화, 전자책 등 모든 디지털 재화에 확

장되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소비자에게 '구매'라는 언어로 포장된다는 점이다. 스팀 스토어에서 게임을 '구매(Buy)'하고, 아이튠즈에서 음악을 '구입'하고, 쿠팡에서 전자책을 '구매'한다. 그러나 이용약관을 열면, 이용자가 취득한 것은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개인적, 비독점적, 양도 불가능한 이용권'이다.

스팀(Valve Corporation)은 2024년 이 문제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스팀의 구독자 계약(Steam Subscriber Agreement)은 종전부터 이용자가 취득하는 것은 라이선스임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실제 구매 화면에서는 '구매(Buy)'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디지털 게임이 DVD처럼 물리적 매체로 유통되지 않는 이상 이는 재판매도, 양도도, 상속도 불가능한 이용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괴리를 정면으로 규율하는 입법을 하였다. 2024년 9월 24일 서명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AB 2426은, 디지털 재화(게임, 영화, 음악, 전자책 등)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buy)', '구입(purchase)'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무제한적 소유권의 이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취득하는 것은 라이선스에 불과하며 해당 라이선스가 일방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국에는 이에 대응하는 입법이 없다. 그러나 약관규제법이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문을 이미 가지고 있다.

2부. 약관은 왜 강한가 — 플랫폼이 만든 사적 질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통제한다. 디지털 재화의 이용약관은 전형적인 약관이며,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제2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 가지 유형을 열거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1호), 고객이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제2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제3호).

디지털 재화의 이용약관에서 자주 발견되는 조항을 약관규제법의 틀에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종료 시 일체의 보상 의무가 없다.'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이용자가 유료로 구입한 아이템이나 콘텐츠가 서비스 종료와 함께 소멸하고 일체의 보상이 없다면, 이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이용자가 특정 아이템의 성능이나 효과를 기대하고 구매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이른바 '너프')하는 것은 급부 내용의 일방적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회사는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게임 서버의 종료는 급부의 일방적 중지 그 자체다.

'계정의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하다.' 약관규제법 제11조 제3호는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계정의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적어도 공개된 주요 판례에서 이 조항들이 게임 서비스 종료 약관에 정면 적용되어 판단된 사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이것이 이 영역의 현주소다.

3부. 법은 이미 재산처럼 취급하고 있다

게임사의 이용약관은 일관된 입장을 취한다. 게임 내 모든 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되고, 이용자는 이용권만 부여받는다. 법적으로 이용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이것이 약관의 세계다. 그런데 약관 바깥의 법은 같은 대상을 전혀 다르게 다루고 있다.

세법 —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성

대법원 2011두30281(2012. 4. 13. 선고)은 리니지 게임머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이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대구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리니지 게임머니를 매수한 뒤 다른 이용자에게 매도하여 총 6억 6,700만 원 상당의 거래를 한 자에게, 남대구세무서가 부가가치세 9,370만 원과 종합소득세 2,483만 원을 부과하였다.

납세자는 '게임머니는 온라인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장치코드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게임사의 이용약관과 같은 논리다. 게임머니는 회사의 것이고, 이용자에게는 이용권만 있으니,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이윤을 남긴 이상, 게임머니는 거래의 객체로 사용될 수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하였다.

세법은 게임머니를 과세 가능한 재화로 보지만, 이것이 곧 민법상 물권적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바로 이 간극이 디지털 재산 논의의 출발점이다. 국세청은 세금을 걷을 때에는 재산이라 하고, 게임사는 서비스를 종료할 때에는 재산이 아니라 한다. 이용자가 돈을 벌 때에는 과세 대상인 재화이지만, 이용자가 돈을 잃을 때(서버 종료)에는 보상 대상이 아닌 이용권이다.

형법 — 재물은 아니지만 재산상 이익은 된다

대법원 2002도475 판결이 출발점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

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리를 연장하면, 게임 아이템을 타인의 계정에서 빼앗는 행위는 절도(형법 제329조)가 아니다.

그런데 같은 게임 아이템이라도 돈이 오가는 순간, 형법의 다른 조문이 작동한다.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으면, 돈이라는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한다. 반대로, 돈을 주겠다고 속이고 아이템을 먼저 받으면, 아이템이 재물이 아니더라도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급심에서 게임 아이템 관련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된 사례가 축적되어 있다. 게임사가 약관에서 '우리 거'라고 해도, 법원은 그 '우리 거'를 빼앗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저작권의 틀 — 이용자의 기여는 어디로 가는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게임의 소스코드, 그래픽, 음악, 스토리는 게임사의 저작물이다. 그런데 이용자가 게임 안에서 만들어낸 것은 무엇인가. 바람의나라에서 10년간 키운 캐릭터의 스탯 배분, 메이플스토리에서 수천 시간을 투입한 아이템 조합과 전적 기록, 리니지에서 형성한 혈맹의 관계망. 이것들은 게임사의 시스템 위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데이터를 게임사가 전부 창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용자의 시간, 판단, 노력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데이터다.

이 데이터가 저작물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세법과 형법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다. 세무서는 이 데이터의 거래에 세금을 매기고, 검찰은 이 데이터의 탈취를 기소한다. 그런데 이 데이터의 귀속에 대해서는 약관 한 줄이 '전부 회사 거'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3호('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지는 아직 다투어지지 않은 쟁점이다.

법은 영역마다 다른 언어를 쓴다. 세법은 과세대상이라고 말하고, 형법은 재물은 아니지만 재산상 이익이라고 말하며, 약관은 이용권일 뿐이라고 말한다. 같은 대상을 두고 법의 언어가 갈라진다.

4부. 게임이 죽을 때 — 서버 종료와 이용자의 지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게임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규정한다. 제2항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러나 서비스 종료 시의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이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이 공정위의 표준약관이다.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배포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4년 2월 26일에 이루어졌다. 이 개정의 배경은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다.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어, 이용자가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요청조차 할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개정된 표준약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서비스 종료 후 환불 절차의 의무화다.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료 아이템 및 유료 서비스에 대한 환불 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5조 제9항,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4항). 둘째,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6조 제7호,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4조).

표준약관의 효력 구조

표준약관은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다(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제5항).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강제력이 없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약관규제법 제19조의3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두 가지 장치를 걸어놓고 있다.

첫째, 표시의무다. 공정위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제6항). 게임사가 표준약관의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 조항을 빼거나 약화시킨 약관을 사용한다면, 그 차이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둘째, 무효 규정이다. 사업자가 표준약관 표지(공정위가 고시하는 표준약관 마크)를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제9항). 표준약관 마크를 달아놓고 환불 조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한 경우, 그 불리한 부분은 무효다.

그러나 표준약관이 규정하는 환불 대상은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에 한정된다. 이용자가 가장 큰 가치를 느끼는 부분 — 10년간 키운 캐릭터에 장착된 장비, 수백만 원을 과금하여 강화한 무기 — 에 대해서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가 가장 큰 가치를 느끼는 부분이 환불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조다.

문제는 그 데이터가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아니라, 그 가치가 법적으로 어떤 청구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5부. 사람이 죽으면 계정은 어디로 가는가 — 상속과 접근권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18년 페이스북 사망자 계정에 대하여 '페이스북 계정은 상속재산의 일부'라고 판결하였다. 독일 민법(BGB) 제1922조의 포괄적 상속 원칙에 따라, 사망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디지털 계정에 대한 이용 계약상의 지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판결은 플랫폼 이용약관에 '계정의 상속 불가'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해당 약관이 독일 민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동일한 쟁점을 다룬 판례가 없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플랫폼 이용 계약상의 지위가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문제다.

일부 대형 플랫폼은 내부 정책에 따라 유족의 계정 접근 요청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내부 정책이다. 플랫폼이 거부하면 이용자(유족)는 소송 외에 강제할 수단이 없다.

가상자산의 경우는 더 극단적이다.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의 협조로 상속 절차가 가능하지만, 개인 지갑(프라이빗 키)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피상속인이 시드프레이즈를 남기지 않았으면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지만, 현실에서는 영구히 잠긴 재산이 된다.

디지털 재산의 상속 문제는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의 문제로 변한다. 법적으로 상속재산이어도, 비밀번호와 시드프레이즈가 없으면 상속인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맺음

돈을 냈는데 소유한 적이 없는 재산. 세금은 재산처럼 걷고, 약관은 이용권이라고 부른다. 서버가 꺼지는 순간, 20년치 데이터는 청구권으로 번역되지 못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문제를 '구매라고 쓰려면 라이선스라고 고지하라'는 입법으로 풀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디지털 계정은 상속재산'이라는 판결로 풀었다. 한국에는 아직 어느 쪽도 없다.

다만, 한국에는 약관규제법이 있다. 이 법은 이미 '급부의 일방적 변경 금지'(제10조 제1호), '급부의 일방적 중지 금지'(제10조 제2호), '사업자 위험의 고객 전가 금지'(제7조 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누군가 이 조항을 들고 법정에 서는 날, 디지털 재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한국의 첫 번째 답이 만들어진다.

나는 대구에서 법을 다룬다. 바람의나라가 서비스를 종료할 때, 그 안에 있던 20년치 데이터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이 해제가 그 질문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이 달의 판례

주목할 판결 둘

1.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 58년 만의 판례 변경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중 제1, 2차 차용금의 이자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부쳐지면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대여원리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핵심 쟁점은 이것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무 전액이 부활하는가.

종전 법리 — 왜 무서웠는가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이래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다. 이른바 추정 법리다.

이 법리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하면,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채무 전액이 부활한다. 소멸

시효가 지난 채무라도, 채무자가 '미안하다'며 100만 원만 갚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어 2억이 살아나는 구조였다. 대부업체나 추심업체가 시효완성 후 채무자에게 일부 변제를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데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전원합의체의 판단 — 무엇이 바뀌었는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이 추정 법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66다2173 판결을 비롯한 종전 판례를 모두 변경하였다.

그 논거는 네 가지다. 첫째, 경험칙에 근거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시효기간, 기산점, 중단·정지 사유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때로 불명확하고 복잡하다. 오히려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둘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개념이다. 채무승인은 상대방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관념의 통지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이다. 셋째, 대법원은 권리 포기 등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펼쳐 왔다. 넷째, 추정 법리는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은 시효이익 포기 여부는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 8명, 별개의견 5명으로 갈린 결정이다.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채무자(중소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거래처에 대한 오래된 채무를 '미안해서' 조금 갚았다가 전액 부활하는 상황이 방지된다. 종전에는 '시효 지난 줄 몰랐는데 100만 원 갚았더니 2억이 살아났다'는 구조가 가능했다. 이제는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 추심 압박에 따른 지급인 경우 그 경위를 보존해두는 것

이 중요하다. 일부 지급 시 '도의적 지급일 뿐, 시효이익 포기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유보를 남길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나머지 채무가 자동으로 부활한다고 전제할 수 없게 되었다.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시효완성 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으려면, 변제합의서에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잔여 채무 전액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받아야 한다. 잔액 확인서의 중요성이 올라갔다.

2. 유류분 제도 개정 — 가업 승계에서 유류분은 왜 문제였나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헌법불합치) + 민법 개정(2026. 2. 12. 국회 의결, 2026. 3. 17. 공포·시행)

배경 — 유류분이 가업 승계의 장애물이었던 구조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 범위의 근친자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한다.

가업 승계에서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구조는 이렇다. 사장이 후계자(자녀 A)에게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증여한다. 사장이 사망한 후, 다른 자녀(B, C)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 종전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으므로(제1115조 제1항), 주식 자체를 넘겨야 할 수 있었다. 지분이 쪼개지면 경영권 분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두 가지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가 유류분 산정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개정 내용 — 세 가지 변화

민법 개정안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되었다. 핵심적인 변화는 세 가지다.

첫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확대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제1004조의2).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도 당연히 소멸한다.

둘째, 기여상속인의 보호다.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제1008조 단서 신설).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여의 소명은 회사 근무·급여·임원등기·경영참여, 부양자료(병원비 부담·생활비 송금 등)를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유류분 반환 방법의 변경이다. 종전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다(제1115조 제1항). 이번 개정으로 가액반환이 허용되었다. 이는 가업 승계에서 실질적 의미가 크다. 종전에는 피상속인이 후계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구하면 주식 자체를 넘겨야 할 수 있었다. 가액반환이 허용됨으로써 주식 대신 금전으로 정산할 수 있게 되어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적용 범위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와 기여분 보호(제1008조 단서)의 개정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제4조). 가액반환(제1115조 제1항)은 2026년 3월 17일(공포·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다.

실무적 의미

이 개정은 가업 승계를 계획하는 중소기업 오너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첫째, 후계자에게 회사 재산을 집중적으로 증여하더라도, 후계자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증여분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업 승계와 부양을 연결하는 설계가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후계자의 기여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해졌다.

둘째, 유류분 반환이 가액반환으로 전환됨으로써, 회사 주식의 물리적 분할 없이 금전 정산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제2호(2026년 5월)에서 다룬 가업상속공제 실무 해제와 함께 읽으면, 가업 승계의 법적 구조가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것이다.

월간궐도 · MONTHLY GWEDO

제3호 · 2026년 6월

발행 / 신한솔 변호사

이 문서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orbitlaw.co.kr